

##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심 사 보 고

#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6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6. 15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6. 15

(제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#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임 양 환

나. 개정사유

-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한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달한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(안 제2조) : 601명 → 602명 (+1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586 → 587명 (+1)
  - 의회사무과 정원 : 15명 (변동없음)
- 부칙2조 정원에 관한 직용례 변경 : 623명 → 624명 (+1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608 → 609명(+1)
  - 의회사무과 정원 : 15명 (변동없음)

#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공무원(9급) 1명을 증원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

-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읍면의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의 가구수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량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효과가 거양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됨.
- 다만, 구조조정 과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채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이며 조례 개정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#### 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#### 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2명이며,  
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587명
2.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5명

화순군조례 제1619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조 중 [표2] 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표2] 지방공무원 정원

구 분	정 원
정원의 총수	624명
1. 집행기관의 정원	609명
2. 의회사무과의 정원	15명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0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집행기관의 정원 : 586명</li><li>2. 의회사무과정원 : 15명</li></ol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0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집행기관의 정원 : 587명</li><li>2. 의회사무과정원 : 15명</li></ol>